

인천지방법원 2024. 10. 29 선고 2023나59998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---

## 재판경과

인천지방법원 2024. 10. 29 선고 2023나59998 판결

인천지방법원 2023. 3. 30 선고 2022가소17297 판결

## 전문

원고, 항소인A

피고, 피항소인B

변론종결 2024. 8. 20.

판결 선고 2024. 10. 29.

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. 3. 30. 선고 2022가소17297 판결

## 주문

-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-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16,2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5,8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 이 유

## 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9. 10.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 보령시 C(이하 '이 사건 임야'라 한다)에 있는 소나무 50그루를 한 그루 당 2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20. 4. 3. 600만 원, 같은 달 10. 400만 원 합계 1,000만 원을 지급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주장 및 판단

### 가. 당사자들의 주장

1) 원고는,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서 50그루의 소나무만 벌채하여야 함에도 131그루를 벌채하였으므로 추가로 벌채한 81그루 소나무의 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.

2)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2그루를 더 벌채하여 총 52그루를 벌채하였는데 이는 착오로 인한 것이며 원고에게 위 2그루 소나무 가액 40만원은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그 이상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.

### 나. 판단

갑 제2호증(가지번호를 포함한다)의 각 기재에 의하면,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소나무 147그루(50그루 + 35그루 + 7그루 + 10그루 + 15그루 + 30그루)를 벌채하겠다고 신고하여 보령시장으로부터 총 131부(50부 + 35부 + 4부 + 5부 + 7부 + 30부)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. 그러나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, 위 생산확인표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유무를 확인하여 발급되는 것으로 이 사건 임야에서 소나무가 실제로 벌채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 점,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는 다른 지역에서 벌채한 소나무를 이식하는 과정에서 위 생산확인표를 유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절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, 피고는 위 수사결과 이 사건 임야에서 52그루의 소나무를 벌채한 것으로 밝혀지자 추가 2그루 대금에 해당하는 40만 원을 원고 계좌로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수량 이상의 소나무를 벌채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**재판장판사** 김범준

**판사** 진희원

**판사** 이형우